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. 9 선고 2018가단53482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B 주식회사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1. 9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,911,882,194원 및 그 중 1,234,468,336원에 대하여 2018. 7. 1.부터 2018. 10. 29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송인우

별지